

고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46호)

심사보고서

1997. 11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1. 22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11. 26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1. 2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민상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중 소속 직원 인척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있을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던것을 개정안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.(안 제8조제4항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민상 시상대상자를 심의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폭넓은 대상자를 발굴 추천 및 시상키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방법은

- 답 : 분야별 심의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결정.

- 문 : 2인이상이면 2/3이상 득하지 못하거나 전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
 - 답 : 1차 분과별 토론을 거친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문제 없었지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.
- 문 : 이해관계인 측정이 예매 모호하고, 재책임위는
 - 답 : 위원회 일기는 1년이므로 수시로 조정 가능.

5. 토 론

- 안 제8조제4항 중 "해당위원은" 다음에 "위원회 결정에 의하여"를 삽입키로 함.

6. 심사결과

- 1997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 제8조제4항 중 "해당위원은" 다음에 "위원회 결정에 의하여"를 삽입하기로 하고 원안가결